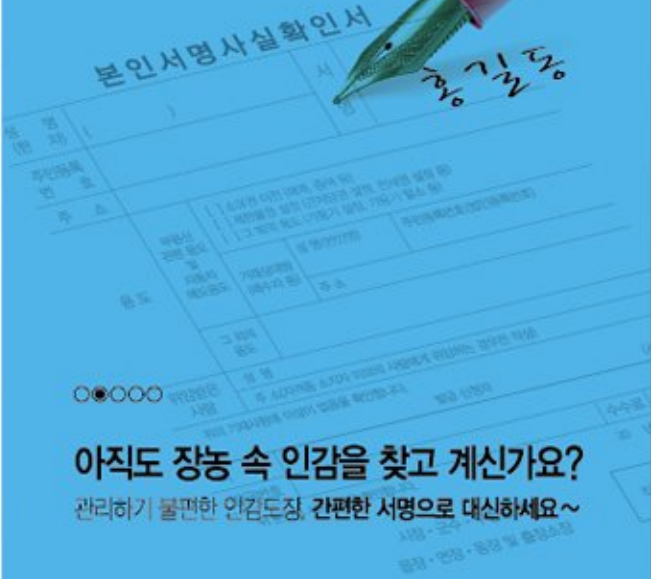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안내



아직도 장농 속 인감을 찾고 계신가요?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간편한 서명으로 대신하세요~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콜센터 02. 2100. 3399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www.moi.go.kr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른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012. 12. 1. 부터 시행)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가능한 곳

법원, 행정기관인 시·군·구청, 차량등록소에 인·허가 시 제출

구 분	최종 제출 기관
2015. 1. 1. 부터	중앙행정기관, 시·군·구청으로 확대
2016. 1. 1. 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단) 또는 각급학교
2017. 1. 1. 부터	국회, 법원(등기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예정)

발급 방법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①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문
⇒ 대리발급 불가



② 본인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
⇒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③ 확인서 발급(읍·면·동 주민센터 등)
⇒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등을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



④ 최종 제출하는 기관에 제출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

유학생, 해외 여행자, 거동이 불편 하신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나 인감증명서 활용

